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3.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기획조정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명서

설명자: 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회의 설치 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내에서 당선인이 정하고 (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시·군·자치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하며 (안 제4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6조)
-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달서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안 제7조)

-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및 차량 등을 지원하고, 위원회는 자료·의견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 제8조)
- 위원회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안 제9조)
-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 2022년 3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선인의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년 3월 4일
------------	-------------

제출년월일: 2022. 3. 4.

제 출 자: 달서구청장
(기획조정실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2조)
- 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안 제3조~4조)
- 다.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안 제5조)
- 라. 위원회 소집 및 의결 규정(안 제6조)
- 마. 사무직원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바. 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규정(안 제8조)
- 사.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안 제9조)
- 아.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5조
-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 편성 범위 내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2. 2. 3.~2. 23.)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요청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의 성명 ·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